

Issue Comment

- ✓ 8월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차 판결 노조 일부 승소
- ✓ 규모는 약 4,223 억원(원금 3,126 억원 + 지연이자 1,097 억)
- ✓ 통상임금 불확실성은 해소, 이제는 본업의 회복 여부에 주목

기아차 - 통상임금 불확실성은 해소, 이제는 본업의 회복 여부에 주목

- 8월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차 판결 노조 일부 승소, 통상임금 1심 집단소송 선고금액은 4,223 억원으로 이 판결금액은 27,424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 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금액
- 통상임금의 범위는 노조에서 주장한 상여금과 중식대, 일비에서 일비 항목을 제외한 상여금 및 중식대만 포함. 기존 청구금액이었던 약 1조 926 억(원금 6,588 억원 + 이자 4,338 억) 중에서 약 4,223 억원(원금 3,126 억원 + 지연이자 1,097 억)만 인정
- 판결 결과에 따라 사측의 실제 부담할 잠정 금액은 총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 1)통상임금 1심 대표소송 집단소송 판결 금액 4,223 억원과, 2)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에 따른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3년분, 3)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년 10개월분 등 총 5년 10개월분 합산치 (법정이자와 수당 등의 인건비 증가 및 이에 따른 퇴직충당금 증가분, 법정보험 등의 증가분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
-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의 경우, 판결 측에서 사측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하였으나 1)노측에서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없으며, 2)사측에서 주장하듯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3)최근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와 전기차 등 향후 투자의 적정규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4)기존 지급해오던 경영성과급의 규모보다 적고, 5)향후 노사협의를 통해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2017년 3분기 실적에 1심 소송결과에 따른 회사 부담금 약 1조원 수준의 총당금 예상. 판결문 수령 후, 검토하여 반영됨에 따라 실적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단 비용지급에 따른 부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대 3~4조까지 예상되었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다는 판단. 기존 예상치 수준으로 발표됨에 따라 이제는 본업의 회복 여부에 주목할 필요
- 다른 자동차업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갑오토텍 판례 이후 주요 업체별로 노사 재협상과 그에 따른 총당금 적립 등을 고려한다면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별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